

문서번호 : GS건주 2017 - 0191호

2017.02.07.

수 신 : 수신처 하단참조

참 조 : 담당

제 목 : “오산시티자이2차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요청의 건

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에서 공급하는 “오산시티자이2차”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”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공급위치 :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98번지 일원 (부산5구역)

나.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(데트)4층 ~ 지상29층 10개동 총 1,090세대

다. 특별공급 청약 일정(예정)

- 모집공고 : 2017년 2월 17일(금)

- 청약접수 : 2017년 2월 22일(수), 10시~14시(당첨자 발표 : 17시)

- 청약장소 : 당사 견본주택 (오산시 오산동 222번지 오산시티자이2차)

라. 사업주체 및 담당자

- 시행/위탁/시공 : (주)하나자산신탁/이제이건설(주)/GS건설(주)

- 담당자 : 김민재 차장, 010-5792-2026, [kmjlm5964@naver.com](mailto:kmjlm5964@naver.com)

(팩스 : 031-378-0577)

※ 분양문의 : 1644-0977, <http://oscitey-xi2.co.kr>

마. 2017년 2월 20일 오전 중으로 추천대상자 회신 요청드립니다.

※ 붙임 :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. 끝.

GS 건설주식회사

대표이사 임 병



수신처 : 국군복지단(복지사업운영과),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(복지과), 경기도청 (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), 서울시청(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), 인천시청(장애인복지과), 경기지방중소기업청(공공판로지원과)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■ 공급위치 :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98번지 일원 (부산5구역)

■ 공급규모 및 내역 : 총 1,090세대

[공동주택 지하(테크)4층 ~ 지상29층, 총 10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]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10% 이내)

•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자, 국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)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저축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저축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에서 제외(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. 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- 대상세대

|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구분(전용면적) | 59A | 59B | 73 | 84A | 84B | 계   |
| 기관추천특별공급 | 13  | 19  | 30 | 31  | 8   | 101 |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

•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[단,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특별공급신청용으로 지자체(읍/면/동 주민센터)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]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.(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)